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2.



이영빈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이영빈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심귀갓길 사업의 용어 추가, 기본원칙 신설 및 전문가의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 해소에 기여하며
- 또한, 안심귀갓길의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우선 조례의 제명을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하였고
- 안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변경 및 신설하였으며
- 안 제3조에서는 안심귀갓길 기본원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제3항에는 안심귀갓길 조성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고
- 안 제6조에서는 안심귀갓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12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이영빈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0082004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: 2020. 1. 16.
발 의 자: 이영빈, 박종길, 윤권근,
이신자, 김인호

1. 개정이유

- 안심귀갓길 사업의 용어 추가, 기본원칙 신설 및 전문가의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, 안심귀갓길의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변경
- 나. 용어 정의 변경 및 신설(안 제2조)
- 다. 안심귀갓길 기본원칙 신설(안 제3조)
- 라. 안심귀갓길 조성 시 관계 전문가 자문 추가(안 제4조제3항)
- 마. 안심귀갓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규정 신설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문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- 나.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 - 2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」
- 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안심조명시설”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.

3. “안전시설”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,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.

제6조(유지관리)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전의 제3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로고젝트를 설치”를 “안심귀갓길을 조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로고젝트를 설치”를 “안심귀갓길을 조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4조(중전의 제3조)의 제목 “(설치 장소 등)”을 “(안심귀갓길 조성사업)”으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4조)의 제목 “(설치기준)”을 “(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로그젝트”를 “안심조명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</u> <u>조성 조례</u></p> <p>1. <u>“로고젝트”란 이미지 클래스에 LED 조명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 텍스트를 투영하는 홍보영상 장치를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3조(설치 장소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로고젝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<u>로고젝트를 설치할 경우에는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</u> <u>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1. <u>“안심조명시설”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안전시설”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기본원칙)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.</u></p> <p><u>제4조(안심귀갓길 조성사업) ①</u> ----- ----- <u>안심귀갓길을 조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안심귀갓길을 조성</u>-----</p>

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또한 관할 교육지청,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조(설치기준) 로고젝트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- 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제5조 · 제6조 (생 략)

-----.

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5조(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) 안심조명시설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유지관리)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
제7조 · 제8조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